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79
----------	------

2016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 외 10명

나. 발 의 일 : 2016년 5월 4일

다. 회 부 일 : 2016년 5월 13일

라. 상 정 일 :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남재경 의원)

가. 제안 이유

성공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사물인터넷도시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사물인터넷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2)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안 제8조).
- 3)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4)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과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안은 성공적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추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보여짐.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책무, 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물인터넷도시조성 자문단 설치,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사업 및 시범사업의 실시,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
제2조(정의)	-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도시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마련
제4조(책무)	- 시장에게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마련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의 목표와 전략 등이 포함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제6조(자문단 등)	-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서울시 관내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규정 마련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 서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실험·제작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 서울시와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제12조(사무의 위탁)	- 전문성을 지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현재 사물인터넷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없으나, 관련 법령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등이 있음.

○ 따라서, 사물인터넷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를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서울시 관련법령에(「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1) 따른 기본계획(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중 사물인터넷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중복 소지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는(2016.2.23.)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 4대 전략과제별 이행과제(54개)를 선정2)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사업(총31개)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참고자료 ①).

1)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에서는 4대 전략과제별 54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4대 전략 - 54개 실행과제 추진

 <b>소셜특별시</b>	 <b>디지노믹스</b>	 <b>디지털 사회혁신</b>	 <b>글로벌 디지털리더</b>
<p><b>시민주도형 디지털 거버넌스</b> 시민주도형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p> <p><b>시민소통 채널 강화</b> 시 소셜 미디어 운영의 효율성 제고 시민중심 디지털 서비스 제공 웹포털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온라인을 통한 시민 여론 수렴 활성화 직원 소셜미디어 활용문화 확산 SNS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기반 강화 국내외 SNS전문가 네트워크 구축</p> <p><b>민간자원과 연계협력</b>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빅데이터 캠퍼스) 민·관 오픈데이터 이용 활성화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p>	<p><b>창업, 인큐베이팅 활성화</b>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운영 서울 앱비즈니스센터 설치·운영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p> <p><b>디지털 경제 통합플랫폼</b> 서울 디지털재단 설립·운영</p> <p><b>기존산업과 디지털 융합</b> G밸리 산업고도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지원</p>	<p><b>디지털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b>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시스템 구축 첨단기술 활용 재난대응 시스템 개발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긴급대응 모바일 영상 커뮤니티 서비스 SNS를 통한 안전-재난 전파기능 강화 교량·터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회 약자 안심 서비스 제공 안심 지키미 CCTV 고도화 효율적 주차공간 활용기반 마련 C-ITS기반 교통안전중심 지능형교통 구축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 고도화 대기환경 정보제공 고도화</p> <p><b>디지털을 통한 시민 삶의 가치 향상</b>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BigCare) 구축 법인·시설 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 50+세대를 위한 온라인 소통공간 확충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평생학습포털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소셜 역량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협업체계 구축 문화행사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정보제공 사용자 주도 오픈프라이밍 관광 통합 정보제공</p>	<p><b>첨단 디지털기술 선제적 적용</b>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확대 조성 사물인터넷 도시 브랜드화 추진</p> <p><b>세계 최고, 디지털 인프라 구현</b> 클라우드 기반 미래형 데이터센터 구축 사물인터넷 플랫폼 고도화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 공간정보 공유·활용 확대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전용 보안관제 체계 구축 서울시 전 기관 통합보안관제 시행</p> <p><b>디지털사업 추진역량 강화</b>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스마트 서비스로 혁신 원장행정 지원을 위한 스마트 행정포털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체계 개선 디지털조직 역량 강화</p> <p><b>세계 시민과의 디지털경험 공유</b> 해외교류 협력 강화 전자정부 정책(서비스) 해외진출 확대</p>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정 의(안 제2조)

- 안 제2조 중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사물인터넷” 및 “사물인터넷도시”에 대한 정의는 상위법령(「국가정보화기본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관련 법규(「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에 명확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바,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의규정을 원용하여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밝혀둠으로써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사물인터넷 개념의 상호비교〉

구분	주요내용
서울시 조례안(2016)	○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방 송 통 신 위 원 회 (2012)	○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사람의 개입 없이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는 통신기술·인프라를 말한다.
미 래 창 조 과 학 부 (2013)	○ “사물인터넷”이란 ICT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 조례의 제정권은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있는 사항만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율 할 수 있는 바, 본 조례는 특별히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4.25, 선고, 96추244)에서도 조례의 제정이 상위 법령의 목적을 전혀 저해하지 않을 때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음.

## 2)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3조는 사물인터넷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바, 법령의 적용순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의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정으로 보여짐.

## 3)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물인터넷 조성과 확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활성화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에게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물인터넷 지원 시책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서울시의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안 제5조제3항은 시장에게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 관련 법령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와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의 상호유기성과 협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5) 자문단 구성(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사물인터넷과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폭넓은 의견과 자문을 구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6조제2항은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상호유기성은 높이고, 유사업무의 중복성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시장이 기존 “정보화전략위원회”를 “디지털전략위원회”로 하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제출 예정되어 조례간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와 연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지원부서별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가 미정착된 환경에서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의 기능을 대신하는 통합형 추진체계가 유지될 경우 부서간 업무회피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화가 우려되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문단과 위원회간 역할조정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6)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는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 사업,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 사업,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고도화 사업,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집행부는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서울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확산의지를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통해 밝히고 있음.
- 민간투자의 한계성과 투자규모의 변동가능성 문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경우 비용의 투입과 강력한 공공의 통제를 비롯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사물인터넷 조성사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7) 사물인터넷도시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8조)

- 안 제8조는 사물인터넷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시 관내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장의 실증 절차를 거쳐 시민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진화시키면서 서울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절차로 보여짐.
- 다만, 북촌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 증대, 관광편의를 위한 인프라 부족, 다수의 목조건물 지정으로 인한 화재 위험의 발생가능성 증가등의 2016년 연차별 확대계획에 따른 다수의 사업추진 불투명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내실 있는 사업운영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8)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제1항은 시장에게 서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창업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해당 법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및 제3조)<sup>3)</sup>상의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   |
|---|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 (4)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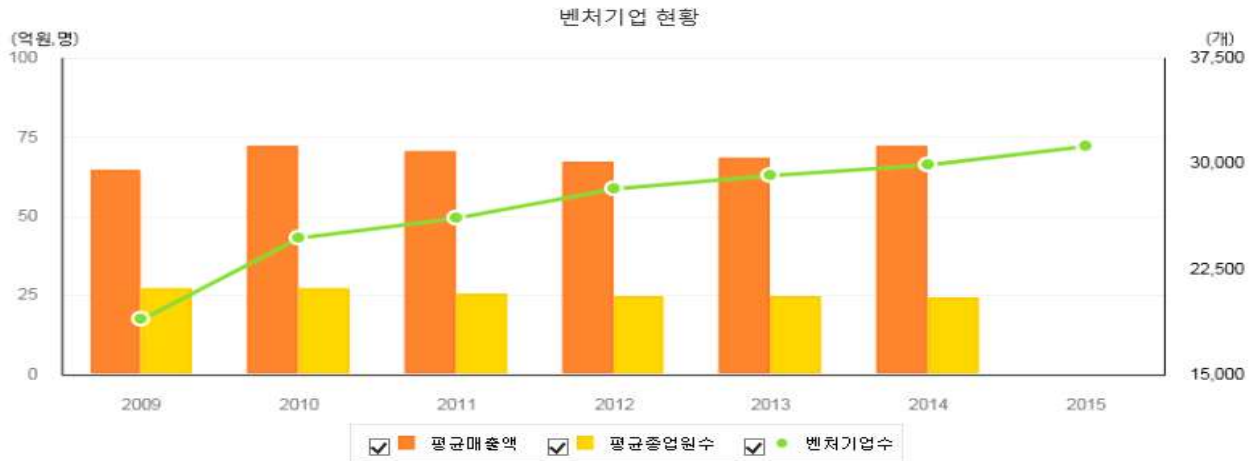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 |   |
|---|
|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 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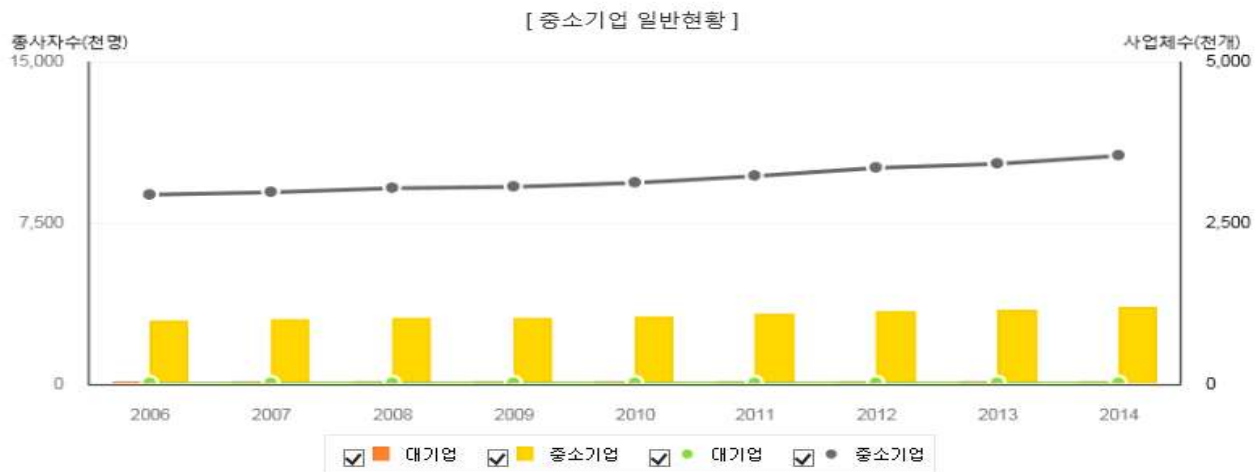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사물인터넷 지원사업 대상을 벤처기업<sup>4)</sup>으로 한정할 경우, 형성기에 있는 사물인터넷 산업 시장의 가변성과 지원기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는(2016.5.23.)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요건을 ‘신생 벤처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등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 서비스화 및 사업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음.



- 안 제9조제2항은 시장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제작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여짐.

#### 9)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1조)

-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자치구, 법인·단체들과 협약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물인터넷도시 사업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각 기관들과의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여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미래창조과학부, NIA(한국정보화진흥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SK플래폼 등 32개 민간회사가 참여하고 있음.

#### 10)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물인터넷 조성,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의 운영관리,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교육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관련 사업의 성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자 안전장치로 보여짐.
-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16년 제267회 임시회(2016.4.27)에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며, 제268회 임시회(2016.6.17.)에 다시 제출되어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남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9
----------	------

발의년월일 : 2016년 5월 4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강구덕, 김제리, 김창수, 성중기,  
신원철, 이종필, 이혜경, 장홍순,  
주찬식, 황준환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최근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발표, 현재 북촌에 운영 중인 IOT(사물인터넷) 시범지역을 202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 사물인터넷은 최근 교통, 복지, 관광, 환경 등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핵심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 성공적인 사물인터넷 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물인터넷도시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5년마다 사물인터넷도시 구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 다.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과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첨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물인터넷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물인터넷”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2. “사물인터넷도시”란 사물인터넷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민의 실생활 및 공공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구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물인터넷도시의 기본 추진 방향
2. 사물인터넷도시 구성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자문단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선제적 도입·적용 등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또는 첨단 디지털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물인터넷도시조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2.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
3.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
4.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
5.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및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2. 기술개발 지원 및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기반설비 구축 지원
4. 기업운영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민, 사물인터넷 관련 신생 벤처기업 등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개발자들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제작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2. 시민을 위한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공동협

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센터의 운영·관리
3. 제10조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가.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

- ① 제1호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
- ② 제2호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
- ③ 제3호 사물인터넷도시 브랜드화 추진에 관한 사업
- ④ 제4호 사물인터넷플랫폼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업
- ⑤ 제5호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 ⑥ 제6호 그 밖에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 ① 제1항 서울특별시 관내 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 ②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다.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

- ① 제1항 시장은 ~ 중략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 ② 제2항 시장은 사물인터넷인큐베이션 센터를 설치·운영

라.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 ① 제2항 1호 사물인터넷도시 전문인력 양성
- ② 제2항 2호 시민을 위한 사물인터넷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③ 제2항 3호 학교에서의 사물인터넷 교육지원 사업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3. 미첨부 사유

○ 기 지원 사업이거나, 의안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4. 상세 추계내역

가. 추계 대상

- ①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사업)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 ②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제1항,제2항
- ③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제2항
- ④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제2항제1호,제2호,제3호
- ⑤ 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기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지원대상이 명시적이지 않아 추계가 불가능한 경우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추계 제외 사유	추계대상사업
■ 기 지원 추진사업	① 제7조(사물인터넷도시 조성사업)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②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제1항,제2항 ③ 제9조(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제1항,제2항
■ 지원대상이 명시적이지 않아 추계 제외	④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2항제1호,제2호,제3호

###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유 제 천
주 무 관	김 재 엽

☎02-3705-1277, e-mail(jaeyob@seoul.go.kr)